

중국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지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jhjung@kiep.go.kr, Tel: 044-414-1280)



차 례

1.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 제정 배경
2.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의 주요 내용
 - 가. 대외투자 서비스 및 지원체계 구축
 - 나. 대외투자 관리체계 및 안전심사 제도
 - 다. 투자자 보호 및 반제재 조치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중국 국무원은 2026년 6월 1일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을 공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동 규정은 기존에 부처규장과 정책문건에 분산되어 있던 대외투자 관련 제도를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에서 통합한 것으로, 중국 대외투자 거버넌스의 법적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됨.
- ▶ 주요 내용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투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심사·법률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반제재·반차별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임.
 - 투자 지원 측면에서는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와 전문서비스·금융·보험 연계를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사업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이 제시됨.
 - 투자 관리 측면에서는 기술·서비스·데이터 이전, 해외투자 안전심사, 정보 보고, 법률 책임을 통해 대외투자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함.
 - 투자 보호·대응 측면에서는 위험 경보, 영사 보호, 분쟁 해결, 투자장벽 조사, 반제재·반차별 조치를 통해 중국 투자자의 해외 권익 보호 기능을 확대함.
- ▶ 동 규정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데이터·전략자산의 해외 이전과 국가안보 관련 투자를 보다 강하게 관리하려는 성격을 가짐.
 - 중국 내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중국기업 및 중국 기원 기술·데이터·자산 관련 거래의 심사와 규정 준수·실사 부담 확대 가능성에 주목함.
 - 향후 해외투자 안전심사, 개인의 대외투자, 역외 재투자, 투자장벽 조사, 반제재 대응 등과 관련한 후속 시행 기준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음.
- ▶ 한국은 중국의 대외투자 지원·관리체계 변화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사업 추진 여건 개선과 규제 리스크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 한국기업의 경쟁·협력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함.
 - 특히 중국기업과의 투자·M&A·기술협력·제3국 공동사업에서는 중국 측 대외투자 절차 이행 여부와 주요국 제재·수출통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거래 리스크 점검과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 제정 배경

■ 중국 국무원은 2026년 6월 1일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이하 「대외투자 규정」)을 공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¹⁾

- 「대외투자 규정」은 2026년 4월 17일 국무원 제8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6년 5월 5일 리창 총리가 국무원령 제837호로 서명하였으며, 2026년 6월 1일 대외 공개됨.
- 동 규정은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무원 행정법규로, 중국 경내 투자자의 대외투자 활동에 적용됨.
 - 제2조는 대외투자가 경외투자(境外投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중국 경내 투자자가 자산·권익 투입 또는 용자·담보 제공 등을 통해 다른 국가·지역의 기업·자산 등에 대한 소유권·통제권·경영관리권 및 관련 권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함.
 - 또한 제32조는 투자자의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대만 지역 투자 관리에 대해서도 동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되,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제4조는 국제 고(高)수준 경제무역 규칙과의 연계,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다자·양자 투자협력 메커니즘 구축, 산업·공급망 국제협력 추진을 규정하여 동 규정이 단순한 투자 관리 법규가 아니라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과 연계된 정책적 기반임을 보여줌.
- 이처럼 동 규정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절차, 투자자 책임, 지원, 권익 보호는 물론 대외경제 전략과의 연계까지 포괄하고 있어, 중국 대외투자 정책의 최근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임.
- 이에 본고는 「대외투자 규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동 규정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정책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중국의 대외투자는 최근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 지역과 분야가 확대되면서 해외투자 활동의 범위와 복잡성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규모는 2024년 1,9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며, 13년 연속 세계 3위권을 유지함.²⁾
 - 같은 해 중국의 3.4만 개 경내 투자자가 전 세계 190개 국가·지역에 5.2만 개의 해외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국의 해외투자는 자원 확보와 시장 개척을 넘어 제조업, 인프라, 디지털, 서비스,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생산·판매·조달 거점 구축과도 연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투자는 단순한 해외시장 개척을 넘어 기업의 국제화, 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연결된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음.

1) 国务院(2026. 6. 1.),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2) 商务部·国家统计局·国家外汇管理局(2025. 9. 8.), 「2024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전문 서비스·위험 대응 수요도 함께 증가함.

- 해외사업 과정에서는 법률, 세무, 외환, 통관, 노동,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기업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은 현지 제도, 시장환경, 법률·세무·노동·통관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해외진출 과정에서 공공 부문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수요가 큼.
- 중국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맞춰 정보 제공, 전문 서비스 연계, 위험 경보, 권익 보호 등 해외사업 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대외투자 규정」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높아진 해외사업 지원 수요를 반영한 제도 정비로 볼 수 있음.

■ 국제 투자환경이 복잡해지고 주요국의 해외투자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도 「대외투자 규정」 제정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함.

- 최근 글로벌 투자환경은 지정학적 갈등, 보호주의 확산, 현지 규제 강화, 공급망 재편, 제재와 대응 조치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은 2025년 1월부터 중국 등 우려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양자 정보기술, 특정 AI 분야의 일부 해외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아웃바운드 투자 규칙을 시행하였고, EU도 2025년 1월 회원국에 반도체·AI·양자 분야 대외투자 위험평가를 권고함.³⁾
- 이러한 흐름은 해외투자가 단순한 기업의 시장 진출 활동을 넘어 기술, 공급망, 전략자산, 국가안보와 연결된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중국기업의 해외사업도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중국 푸펑그룹의 노스다코타 옥수수 가공공장 프로젝트가 군사시설 인근 입지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로 중단되었고, 캐나다는 국가안보 심사를 거쳐 중국계 투자자 3곳에 핵심광물 기업 지분 처분을 명령함.⁴⁾
 - EU도 외국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중국기업이 참여한 공공조달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하였음.⁵⁾
- 이처럼 해외 투자 심사, 핵심광물·배터리 공급망 규제, 공공조달 조사, 현지 국가안보 심사 등이 중국기업의 해외사업 변수로 부상하면서, 동 규정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권익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본 틀로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European Commission(2025. 1. 15.), "Recommendation on outbound investments."

4) 중국계 농식품·바이오발효 기업인 푸펑그룹의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내 농업·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였음에도 군사시설 인근 입지를 이유로 국가안보 논란에 직면하였고, 캐나다 사례 역시 핵심광물 공급망이 국가안보와 연결되면서 중국계 투자자의 지분 보유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AP(2023. 1. 31.), "Air Force opposes Chinese-owned corn plant for North Dakota"; Government of Canada(2022. 11. 2.), "Government of Canada orders the divestiture of investments by foreign companies in Canadian critical mineral companies."

5) EU의 경우 CRRC 칭다오쓰팡(국유 철도차량 제조기업 CRRC 산하 기업)이 참여한 불가리아 전동차 공공조달, 중국계 태양광 기업인 LONGi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Shanghai Electric(국유 전력·전기장비기업) 관련 기업이 참여한 루마니아 태양광 공공조달에 대해 심층조사를 개시하였고, 조사 착수 이후 해당 기업들이 입찰에서 철수하면서 조사가 종결됨. European Commission(2024. 3. 26.), "Statement by Commissioner Breton on withdrawal by CRRC Qingdao Sifang Locomotive from public procurement following the Commission's opening of an investigation under the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2024. 6. 7.), "Commission closes two in-depth investigations in the solar photovoltaic sector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companies from public procurement."

2.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의 주요 내용

가. 대외투자 서비스 및 지원체계 구축

■ 「대외투자 규정」은 대외투자 지원체계를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에서 전문서비스·금융·보험까지 결합된 종합서비스 체계로 확대함.

- 기존 대외투자 지원은 투자정보 제공, 정책 안내, 투자 승인·등록 절차 지원 등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했으나, 동 규정은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정부·전문기관·금융기관·정책성 보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함.
 - 제6조는 국가가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무역·투자 일체화를 추진하도록 하면서 외사·법률·재정·금융·통상·물류·출입국·통관·무역 촉진 등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
 - 특히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은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의 추가 보완에 관한 지도의견」(2025. 10.)에 제시된 해외 종합서비스 플랫폼 및 ‘1+N’ 서비스 체계 구축 방향을⁶⁾ 행정법규 차원에서 반영함.
- 또한 성(省)급 지방정부를 대외투자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지원 기능을 행정법규 차원에서 명문화함.
 - 제6조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⁷⁾가 투자자에게 법률·정책·투자 가이드·지식재산권·위험 예방·권익 보호 관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동 규정은 시장 기반 전문서비스 및 금융·보험 체계를 대외투자 지원체계에 포함함으로써 해외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금융·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제도화함.
 - 제7조는 법률·회계·감사·신용평가·중재·조정·지식재산권 등 전문서비스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과 정책성 보험기관의 해외투자 보험 제공을 장려함.

■ 대외투자 지원의 범위가 투자 개시 단계의 행정절차 지원에서 투자 이후 해외사업 운영과 위험 관리 단계까지 확장된 점이 특징적임.

- 제6조~제9조는 중앙정부, 성급 지방정부, 전문서비스 기관, 금융기관, 정책성 보험기관, 업종협회·상회, 무역·투자 촉진 조직 등 다양한 주체의 지원 기능을 규정함.
 - 특히 제9조는 업종협회·상회가 법률·법규·정관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대외 투자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업종협회·상회와 무역·투자 촉진 조직이 정보 상담, 시장 개척, 경제무역 교류, 권익 보호, 분쟁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이는 대외투자 지원체계가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민간·준공공 조직을 활용한 해외사업 지원 네트워크로 확대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사업 운영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6) 商务部·外交部·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国务院国资委(2025. 10. 14.), 「关于进一步完善海外综合服务体系的指导意见」.

7) 성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및 그 관련 부서가 포함됨.

표 1. 기존 해외투자 지원체계와 「대외투자 규정」의 서비스·지원체계 비교

구분	기존 지원체계	「대외투자 규정」 내 서비스·지원체계
지원 성격	정부 중심의 투자 정보 제공, 정책 안내, 승인·등록 절차 지원	정부·전문기관·금융기관·정책성 보험기관·업종단체가 결합된 종합서비스
지원 범위	투자 개시 전후의 행정절차와 일부 공공서비스 중심	투자 준비, 해외사업 운영, 위험 관리, 분쟁 대응 등 해외사업 전 단계로 확대
서비스 분야	투자정책 안내, 국별 투자 정보, 일부 절차 지원	법률·재정·금융·통상·물류·통관·무역 촉진·지식재산권·보험·중재 등 종합서비스 제공
참여 주체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 중심	중앙정부, 성급 지방정부, 전문서비스 기관, 금융기관, 정책성 보험기관, 업종협회·상회, 무역·투자 촉진 조직 등으로 확대
정책 의미	해외투자 절차 이행 지원	해외사업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자료: 国务院(2026. 6. 1.),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商务部·外交部·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国务院国资委(2025. 10. 14.), 「关于进一步完善海外综合服务体系的指导意见」; 国家发展改革委(2017. 12. 26.), 「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商务部(2014. 9. 6.), 「境外投资管理办法」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대외투자 관리체계 및 안전심사 제도

■ 「대외투자 규정」은 대외투자 관리 범위를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등록 중심에서 투자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확대함.

- 기존 대외투자 관리제도는 승인·등록, 정보 보고 등 투자 개시 단계의 행정절차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동 규정은 투자정책 수립, 위험 관리, 투자 행위 감독 등을 포괄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
 - 제10조는 국가가 대외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분류·등급별 전 과정 감독을 실시하며, 투자 편리화 및 위험 방지를 결합하도록 규정함.
 - 제11조는 국무원 투자 주관 부문과 상무 주관 부문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 수요, 투자 대상국의 투자환경 변화,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려·제한·금지 투자정책을 수립·조정·시행하도록 하고, 제12조는 투자자의 승인·등록, 정보 보고, 국경 간 자금 등록 등 관련 절차 이행과 감독검사 협조 의무를 규정함.
- 이는 대외투자를 단순한 투자 프로젝트 관리 대상이 아니라 투자정책, 산업정책, 공급망 전략과 연계된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기존의 투자 개시 단계 중심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투자 이후의 운영과 사후 감독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 관리체계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술·데이터·국가안보 요소를 대외투자 관리체계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경제안보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함.

- 대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데이터 이전 문제를 관리체계에 포함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를 명문화함.
 - 제13조는 투자자가 해외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품·기술·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기술인력 파견, 기술 지도, 교육훈련 등 간접적 방식의 이전도 관리 대상에 포함함.

- 제14조는 환전, 상품·기술 수출입, 서비스 무역, 데이터 이동, 기업결합 심사, 수출통제, 네트워크 안보 감독 등 관련 제도와 대외투자 관리체계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제15조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 및 관련 자산·권익의 양도·처분까지 안전심사 대상으로 포함함.
- 이는 대외투자를 독립적인 기업의 투자활동이 아니라 기술 안보, 데이터 안보, 공급망 안보, 국가안보와 연결된 경제안보 정책 영역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을 보여줌.
- 특히 안전심사 범위가 투자 실행 단계에 그치지 않고 해외 자산과 권익의 양도·처분 단계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해외투자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투자자의 자율적 투자 결정을 인정하는 동시에 준법경영과 위험 관리 책임을 강화함.

- 대외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외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안보·평판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책임을 확대함.
 - 제5조는 투자자의 자주적 투자 결정, 자기책임, 손익 자기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법규 준수, 상업 윤리, 공정경쟁, 사회적 책임 이행 의무를 규정함.
 - 제16조는 해외투자 기업의 준법경영, 내부 통제, 안전 생산,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제17조는 뇌물·사기·상업비밀 침해·부당 저가판매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함.
- 이는 투자 자유화 확대와 국가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최근 중국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ESG, 공급망 실사, 반부패 규제 등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기업의 해외 준법경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평가됨.

표 2. 기존 대외투자 관리체계와 「대외투자 규정」의 관리체계 비교

구분	기존 관리체계	「대외투자 규정」의 관리체계
관리 범위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등록, 정보보고 등 투자 개시 단계 중심	투자정책 수립, 위험 관리, 투자행위 감독, 자산 처분까지 전 과정 관리
감독 방식	승인·등록 및 사후보고 중심	분류·등급별 감독, 정보 보고, 안전심사를 결합한 통합 관리
국가안보 관리	민감 국가·업종 투자제한 및 수출통제·기술 관리 제도에 의한 개별 관리	해외투자 안전심사를 명문화하고 국가안보 영향 여부를 종합 심사
기술·데이터 관리	기술 수출·수출통제·데이터 이동 등을 별도 제도에서 관리	기술·서비스·데이터 이동을 대외투자 관리체계와 직접 연계
투자자 의무	승인·등록, 정보 보고 등 절차적 의무 중심	준법경영, 내부 통제, 위험 관리, 사회적 책임 의무까지 확대
벌칙·법률책임	승인·등록, 정보 보고 등 절차 위반 중심 관리	금지 투자, 절차 위반, 안전심사 불이행,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계적 제재 및 대외투자 활동 제한 명문화
정책 의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관리	경제안보와 연계된 국가 차원의 대외투자 거버넌스 구축

자료: 国务院(2026. 6. 1.), 「国务院关于加强对外投资的规定」; 国家发展改革委(2017. 12. 26.), 「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商务部(2014. 9. 6.), 「境外投资管理办法」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동 규정은 대외투자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책임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지 투자 위반, 승인·등록 절차 미이행, 안전심사 비협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시함.
- 위반 행위 유형별로 시정명령, 위법소득 몰수, 과징금 부과, 투자활동 중단, 자산 처분, 일정 기간 대외투자 활동 제한 등 단계적 제재수단을 규정함.
 - 제27조는 금지 대외투자 실행, 승인·등록 절차 미이행, 허위자료 제출·사실 은폐, 부정한 방법의 승인·등록 취득 등에 대해 투자활동 중단, 지분·자산 처분, 위법소득 몰수, 투자액에 비례한 벌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함.
 - 제28조에 따르면 해외투자 안전심사 비협조, 허위자료 제출, 심사 결정 불이행 시 시정명령, 위법소득 몰수,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1~3년간 대외투자 활동 금지, 투자활동 중단 및 지분·자산 처분 등이 가능함.
 - 제29조는 뇌물·사기·상업비밀 침해·부당 저가판매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기한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위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년간 대외투자 활동 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제26조는 대외투자 관리·서비스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가 알게 된 국가비밀, 업무비밀, 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불법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31조는 대외투자 업무 담당 공직자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익 추구, 비밀 누설 등에 대한 처분 및 형사책임 추궁 근거를 규정함.
- 동 규정은 대외투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적 의무와 준법경영 요구를 제재수단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기존 승인·등록 중심 관리체계와 명확히 구별됨.

다. 투자자 보호 및 반제재 조치

- 「대외투자 규정」은 투자자의 해외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 수단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전 경보, 영사 보호, 분쟁 해결 지원 등 대외투자 정책의 보호 기능을 강화함.
- 기존 대외투자 제도는 투자 승인·등록 등 투자 개시 단계의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동 규정은 해외투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 분쟁, 권익 침해 문제를 정부의 보호 대상에 포함함.
 - 제18조는 관계 부처가 투자 대상국의 안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조기 경보·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제19조는 국제조약, 협정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투자자와 투자 프로젝트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제20조는 영사 보호 및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규정함.
 - 또한 제21조는 협상·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방식의 분쟁 해결을 장려하고, 제22조는 해외 소송·조사 과정에서 국가비밀, 데이터 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 이는 해외투자 관리의 범위를 투자 승인과 감독에서 투자자의 해외 권익 보호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외투자 정책의 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지정학적 갈등, 해외 규제 강화, 자산 동결 및 몰수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중국의 해외이익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투자장벽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조사·평가 기능을 강화함.

- 투자 대상국의 정책·규제 변화로 인해 중국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이 제한될 경우, 상무 주관 부문이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정책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함.
 - 제23조는 투자자가 투자 목적국에서 무역 관련 투자장벽 또는 기타 투자·경영상 장애를 겪을 경우 상무 주관 부문이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국가에 대한 투자정책 조정, 특정 상품·기술의 수출입 제한, 국제 서비스 무역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기존의 기업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해외 투자환경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중국이 무역장벽뿐 아니라 투자장벽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대상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 보호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중국의 대외투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과 연계된 반제재·반차별 조치를 명문화하여 해외이익 보호와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강화함.

- 외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투자자 및 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 투자·무역·입국 제한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24조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외국제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조직 및 개인을 반제재 명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제25조는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거나 중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투자·무역 제한, 거래 금지, 입국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대중 투자 제한, 첨단기술 규제, 경제안보 조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기존의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법」,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금지 방법」 등 개별 제도와 대외투자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범위를 개별 기업의 권익 보호에서 국가 차원의 해외이익 보호와 경제안보 대응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표 3. 기존 투자자 보호체계와 「대외투자 규정」의 보호·대응체계

구분	기존 보호체계	「대외투자 규정」의 보호·대응체계
투자자 보호	영사보호, 투자협정, 개별 분쟁대응 중심	위험 경보·영사 보호·분쟁 해결을 포함한 종합 보호체계
위험 관리	투자자 자율 대응 중심	정부의 모니터링·조기 경보·위험 평가 체계 구축
투자장벽 대응	기업 또는 업종별 대응 중심	정부 주도의 투자장벽 조사 및 정책 대응
차별 조치 대응	「반외국제재법」 등 개별 법률에 의존	대외투자 규정 내 반제재·반차별 조치 명문화
보호 범위	영사 보호·투자협정·개별 분쟁 대응 등 사안별 보호 중심	투자 이후 운영·분쟁·권익 보호까지 확대
정책 의미	해외투자 촉진 및 관리 중심	해외이익 보호와 경제안보 대응체계 강화

자료: 国务院(2026. 6. 1.),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全国人大常委会(2021. 6. 10.),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商务部(2021. 1. 9.),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및 전망

■ 동 규정은 기존에 부처규장과 정책문건에 분산되어 있던 대외투자 서비스·관리·보호 기능을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에서 통합함으로써, 중국 대외투자 거버넌스의 법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존 대외투자 제도는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부처규장을 통해 승인·등록 등 절차를 관리하고,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⁸⁾ 문건이나 부처 공동 지침을 통해 투자 방향 유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

○ [표 4]는 중국 대외투자 관련 제도를 법규(음영 표시 부분)와 정책문건으로 구분해 정리한 것임.

표 4. 중국 대외투자 관련 법규·정책문건의 위상과 주요 내용

문건 유형·위상	대표 문건	발표기관	시기	주요 내용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023	대외관계,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 해외이익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1994 제정/ 2025 개정, 2026 시행	대외무역 관리, 대외무역 질서, 무역 관련 대응 조치
행정법규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	국무원	2026	대외투자 서비스·관리·보호 통합
국무원 판공청 정책문건	「경외투자 방향의 추가 유도 및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	국무원 판공청	2017	해외투자 방향을 장려·제한·금지 유형으로 구분
부처규장	「경외투자 관리 방법」	상무부	2014	기업 해외투자의 승인·등록, 증서 발급 등
	「기업 경외투자 관리 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	해외투자 프로젝트 관리, 승인·등록, 정보 보고
부처 공동 정책문건	「디지털경제 대외투자협력 업무 지침」	상무부·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공업정보화부	2021	디지털 경제 분야 해외투자 협력, 데이터·네트워크 안보 등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의 추가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	상무부·외교부·발개위·공업정보화부·국무원 국자위(국무원 동의)	2025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해외진출 기업 서비스 지원

주: 1) 법률·행정법규·부처규장은 제정 주체와 효력 위계를 갖는 법규인 반면, 국무원 판공청 문건과 부처 공동 지도의견·업무 지침은 정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정책 집행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문건에 해당함.

2) 중국 「입법법」상 법률은 전국인대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며, 부처규장은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 등이 법률 및 국무원의 행정법규·결정·명령에 근거하여 각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함.

자료: 全国人大常委会(2023), 「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 全国人大常委会(2025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国务院(2026),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国务院办公厅(2017), 「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 商务部(2014), 「境外投资管理办法」; 国家发展改革委(2017), 「企业境外投资管理办法」; 商务部·中央网信办·工业和信息化部(2021), 「数字经济对外投资合作工作指引」; 商务部·外交部·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国务院国资委(2025), 「关于进一步完善海外综合服务体系指导意见」을 토대로 저자 작성.

8)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국무원의 사무기구로, 국무원 회의 준비, 국무원 및 국무원 판공청 명의 문서의 기초·심사, 국무원 각 부문과 지방정부의 국무원 결정사항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함.

- 동 규정은 승인·등록 관리,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 해외이익 보호, 안전심사, 투자장벽 조사, 반제재 조치, 법률책임 등을 하나의 행정법규 체계로 통합·재정비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됨.⁹⁾

■ 동 규정은 중국의 대외투자 정책이 해외진출 지원과 함께 경제안보, 기술·데이터 관리, 해외이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줌.

- 동 규정은 해외투자 안전심사, 기술·서비스·데이터 이전 관리, 해외 자산·권익 처분 관리, 투자장벽 조사, 반제재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투자를 단순한 자본 이동이 아니라 국가안보·기술 안보·데이터 안보와 연결된 정책 영역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을 보여줌.
- 중국정부는 이를 “발전과 안전의 통합” 또는 “고수준 개방과 고수준 안전의 병행”이라는 정책 기조로 설명¹⁰⁾
 - 중국 내 전문가들도 해외투자 안전심사, 투자장벽 조사, 반제재 조치를 법적 대응수단의 보완으로 평가하면서, 동 규정이 대외투자 안전위험 방지 및 대응기제를 구축하고 대외투자 거버넌스의 법치화·규범화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함.¹¹⁾
- 해외 분석도 동 규정이 기존 승인·등록 중심의 대외투자 관리에서 벗어나 국가안보 심사, 데이터·기술 통제, 전 과정 감독, 대응 조치를 하나의 규제 틀로 통합한 것으로 평가함.¹²⁾

■ 중국 국내외 평가를 종합하면, 중국 내에서는 ‘기업 해외진출 지원·보호와 대외투자 법제화’를 강조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국가안보형 통제 강화와 거래 리스크 확대’에 주목하는 시각 차이가 나타남.

- 중국 내 공식·전문가 평가는 대체로 동 규정을 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대외투자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함.
 - 인민일보 해외판은 동 규정이 대외투자 서비스·관리·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대외투자의 고품질 발전과 투자자 권익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¹³⁾
 - 증권시보는 동 규정을 중국 최초의 대외투자 전문 행정법규로 평가하면서, 기존 제도의 파편화를 완화하고 중국 투자자를 위한 전 과정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함.¹⁴⁾
- 반면 해외 법률·비즈니스 관련 분석에서는 중국기업 및 중국 연계 자산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의 실사·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함.
 - Morrison & Foerster는 동 규정이 기술 수출 허가, 수출통제, 데이터 이전 관련 준수 의무를 대외투자 절차와 결합시켰기 때문에 역외 지주회사 설립, 지식재산권 이전, R&D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중국 연계 기술·데이터·전략적 역량의 해외 이전도 규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¹⁵⁾

9) 중국정부 고위 인사는 기존 대외투자 관리·서비스가 주로 부처규정과 규범성 문건에 의존해왔으나, 행정법규 차원의 전문 입법을 통해 장기간 시행되어온 유효한 조치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중국 내 전문가들도 동 규정이 기존 행정 관리 규칙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행정법규 차원의 입법이며, 대외투자 관리가 단순한 승인·등록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체계, 관리기제, 보호 조치, 책임 추궁을 포함하는 종합 관리 문제로 변화했다고 평가함. 新华社(2026. 6. 1.), 「司法部、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负责人就《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答记者问」; 法治日报(2026. 6. 1.),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专家解读」.

10) 新华社(2026. 6. 1.), 「司法部、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负责人就《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答记者问」.

11) 司法部(2026. 6. 1.), 「(纪文华)以制度创新护航对外投资 为更高水平开放提供法治保障」.

12) China Briefing(2026. 6. 1.), "China Recasts Outbound Investment Governance Under New State Council Regulation."

13) 人民日报海外版(2026. 6. 2.), 「对外投资规定出台, 释放什么信号?」.

14) 证券时报(2026. 6. 2.), 「对外投资迎里程碑式立法 护航企业“走出去” 全流程保障企业出海合法权益」.

- Morgan Lewis는 동 규정으로 역외 구조조정, 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이전, 기존 해외자산 처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중국 연계 자산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해외 인수자의 거래 리스크로 전가될 수 있다고 평가함.¹⁶⁾
- Reuters는 Meta의 중국계 AI 스타트업 Manus 인수 차단 사례 이후 동 규정이 공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중국과 연계된 기술·데이터·인재가 포함된 해외거래에 대한 중국의 관리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함.¹⁷⁾
- 따라서 동 규정의 효과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일방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만 나타나기보다, 정부의 종합적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와 국가안보형 관리 강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가 병존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 금융·보험 지원, 전문서비스 네트워크, 투자자 보호 및 반제재 조치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투자정책, 정보 보고, 안전심사, 기술·서비스·데이터 이전 관리, 해외 자산·권익 처분 및 재투자 관리가 강화되면 중국기업 입장에서도 해외투자 추진 과정의 행정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음.¹⁸⁾
 - 또한 해외 거래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측 파트너가 필요한 승인·등록·보고·안전심사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중국기업과의 거래, 공동투자, M&A, 기술협력 과정에서 추가적인 거래 리스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¹⁹⁾
- 한편 동 규정은 향후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 해외이익 보호체계, 해외투자 안전심사, 개인의 대외투자, 역외 채투자, 투자장벽 조사 등 후속 제도 정비의 기본 틀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음(표 5 참고).
- 규정의 여러 조항에서 국무원 투자 주관 부문, 상무 주관 부문 및 관계 부처가 투자정책 수립, 안전심사, 투자장벽 조사, 개인 대외투자 관리 방법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33조는 중국 경내 개인 등의 대외투자 관련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국무원의 투자 주관 부문과 상무 주관 부문이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후속 세칙 제정 가능성이 높음.
- 해외투자 안전심사 역시 세부 시행 기준이 추가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음.
 - Morrison & Foerster는 제15조의 안전심사에 대해 아직 신고 기준, 심사 절차, 기간, 실체 기준, 완화조치 등 주요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함.²⁰⁾
- 따라서 동 규정은 향후 부처별 시행규칙, 절차 기준, 위험평가 및 조사 메커니즘이 추가로 구체화될 수 있는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음.

15) Morrison & Foerster(2026. 6. 4.), "China's ODI Rules Just Changed—Here's What It Means for Cross-Border Tech Transactions."

16) Morgan Lewis(2026. 6. 2.), "Regulation on Outbound Investment: Why Chinese Counterparty Compliance Is Now a Deal Risk."

17) Manus는 중국에서 창업된 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으로, Reuters는 Meta의 인수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승인 여부와 중국 기원 기술·인재·데이터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다고 보도함. Reuters(2026. 6. 1.), "China expands curbs on foreign deals, tech transfer after Meta-Manus block."

18) 특히 기술·데이터·전략자산이 결합된 해외투자, 해외 구조조정, 해외 자산 처분, 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이전 등은 중국 당국의 심사 또는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기업의 해외거래 자율성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

19) 해외 법률·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뿐 아니라 중국 자본·기술·데이터·인력이 연계된 해외 프로젝트의 실사와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20) Morrison & Foerster(2026. 6. 4.), "China's ODI Rules Just Changed—Here's What It Means for Cross-Border Tech Transactions."

표 5. 중국 「대외투자 규정」에 근거한 향후 정책 전망

「대외투자 규정」 내 근거	향후 정책 전망
중국 경내 주민 개인 등의 대외투자 구체 관리 방법은 국무원 투자 주관 부문·상무 주관 부문이 제정 (제33조 제3항)	개인의 대외투자, 개인 명의 해외법인 설립, 역외 SPV·우회투자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법이 제정될 가능성
투자자의 중국 경외 금융시장 투자는 본 규정과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제33조 제1항)	QDII, QDLP 등 기존 금융시장 해외투자 제도와 동 규정 간 적용관계가 정비될 가능성
해외투자자로 취득한 자산·권익의 중국 경외 재투자도 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 적용 (제33조 제2항)	해외 자회사 재투자, 역외 지분구조 변경, 역외 자산 처분·재배치에 대한 보고·관리 기준이 구체화될 가능성
국가가 해외투자 안전심사제도를 건전화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투자 및 자산·권익 처분을 심사 (제15조)	안전심사 대상, 절차, 담당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될 가능성
투자장벽 또는 기타 투자 경영상 장애에 대해 상무 주관 부문이 조사할 수 있음 (제23조)	상무부 중심의 투자장벽 조사 개시 요건, 조사 절차, 후속 조치 기준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반제재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24~25조)	「반외국제재법」과 연계한 대외투자 분야 대응 조치의 적용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될 가능성

주: QDII는 적격 국내 기관투자자(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로, 중국 내 적격 금융기관 등이 허가·한도 내에서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QDLP는 적격 국내 유한책임투자자(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 시범제도로, 승인된 한도 내에서 국내 자금을 해외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자료: 国务院(2026. 6. 1.),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Morrison & Foerster(2026. 6. 4.), “China’s ODI Rules Just Changed—Here’s What It Means for Cross-Border Tech Transactions”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시사점

■ 중국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는 제3국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현지화·공급망 구축 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의 해외거점 확대가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동 규정은 해외 종합서비스 체계, 금융·보험 지원, 전문서비스 네트워크, 투자자 보호 및 분쟁 대응을 제도화함으로써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정부가 중앙·지방정부·전문서비스 기관·금융기관·정책성 보험기관·업종협회 등을 연결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할 경우 아세안·중남미·중동·유럽 등에서 중국기업의 생산·판매·자원 확보 거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전기차·배터리·핵심광물·ICT·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가격경쟁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종합 서비스·금융·보험·리스크 대응체계가 결합된 국가 차원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로 인식하고, 제3국 시장별 중국기업의 거점 구축, 현지 파트너십 형성, 공급망 연계, 정책금융 활용 여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국기업과의 투자·M&A·기술협력·제3국 공동사업에서는 중국 측 대외투자 규정 준수 여부가 새로운 거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은 협력 초기 단계부터 중국 측 규제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 규정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뿐 아니라 기술·서비스·데이터 이전, 해외 자산·권익 처분, 역외 재투자, 해외투자 안전심사, 반제재 조치 등을 대외투자 관리체계와 연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 공동투자, 지분 거래, M&A, 기술협력, 제3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중국 측 파트너가 필요한 승인·등록·보고·안전심사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가 거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중국 기원 기술·데이터·지식재산권·R&D 인력·전략자산이 포함된 거래에서는 중국의 기술 수출, 수출통제, 데이터 이전, 해외투자 안전심사 관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중국 측 내부 승인 및 정부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리스크는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중국기업이 한국 내 법인 설립, 지분 투자,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중국 측의 대외투자 승인·등록·보고 의무와 기술·데이터 이전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임.
- 아울러 한국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동 규정상 '중국 경내 투자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이 제3국에 투자하거나 기술·서비스·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승인·등록·보고·안전심사 의무 및 기술·데이터 이전 제한이 직접 적용될 수 있어 재중 한국기업의 글로벌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제3국에서 중국기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대외투자 규정뿐 아니라 미국·EU의 제재, 수출통제, 투자심사, 공급망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함.
 - 중국의 해외이익 보호, 투자장벽 조사, 반제재 조치가 제3국 프로젝트나 거래 상대방에 적용될 경우, 한국기업은 중국 측 규정 준수 요구와 미국·EU 등 제3국 규제 준수 의무 사이에서 충돌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의 거래·협력 계약에서 중국 측 승인·등록·보고·안전심사 완료 여부를 선행 조건으로 설정하고, 금지 투자, 절차 미이행, 안전심사 불이행 등에 따른 투자활동 중단·자산 처분·과징금 리스크를 진술·보장,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조항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외투자 규정」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절차와 책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기업이 중국 측 협력 대상을 선별하는 데 참고할 만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

- 동 규정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자기책임, 준법경영, 위험 관리, 안전 생산, 비상 대응, 상업윤리, 공정경쟁, 사회적 책임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측 파트너가 해외투자 승인·등록, 정보 보고, 안전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와 내부 준법체계·위험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협력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측 파트너의 규정 준수 능력과 해외사업 관리 역량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과정의 불확실성을 일부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일률적으로 경계하기보다, 중국 측 규정 준수 능력과 해외사업 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선별하고, 비민감 분야 또는 상호보완성이 큰 분야에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제3국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생산·시공 역량, 자금 조달 능력과 한국기업의 품질 관리, 운영 관리, 부품·소재·장비, 친환경·디지털 솔루션 역량 등이 결합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핵심기술, 첨단제조, AI, 반도체, 데이터,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외투자 규정」뿐 아니라 주요국의 제재·수출통제·투자심사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함.

■ 한국은 기업의 해외진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급망, 기술, 데이터, 제재·수출통제, 현지 투자심사 관련 리스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사전 점검과 피해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중국의 「대외투자 규정」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 역시 해외투자를 단순한 기업활동이 아니라 기술 유출, 공급망 재편, 전략자산 이전, 국가안보와 연결된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임.
- 한국도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안보상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기술,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성, 데이터 이전, 제재·수출통제 충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외투자, 공동투자, M&A, 제3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 투자심사, 제재·수출통제, 데이터 규제, 현지 산업정책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법률·통상·기술 분야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 사전 컨설팅, 분쟁·피해 대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연계하여 경제안보 품목의 해외 생산시설 투자, 핵심광물·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의 해외거점 확보, 제3국 공급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보험 지원과 함께 국가 위험, 제재, 수출통제, 데이터 규제, 현지 투자심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의 해외이익 보호, 투자장벽 조사, 반제재 조치가 제3국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거래나 경쟁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조기 경보, 법률·통상 자문, 피해사례 접수 및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EP